

<검토보고서>

1999. 2.

제40회 충주시의회(임시회)  
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

총무위원회

## 〈검토보고서〉

- 충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
- 동조례안은 1999. 1. 2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69호로 접수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### 1. 제안이유

-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환경보전 시책을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고
-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함.

### 2. 주요골자

-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계획수립
- 환경전문가 및 민간단체등이 참여하여 연구활동과 재정지원을 통해 환경보전시책을 적극추진코자 함.
- 다른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 협력을 통해 환경보전시책을 광역적으로 적극대처토록 함.

### 3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1998. 5. 2일 제32회 임시회시 총 2장 25조로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의 수정의결 하였으나 충주시장의 요구에 의하여 철회된 조례로서
- 본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은
  - 제15조(충주시 환경위원회의 설치등)에서
    - ② “위원은 시관계공무원 등”을 “위원은 환경 관계전문가 및 시관계 공무원 2명을 포함 하여” 시장이 위촉한다와
    - ③ “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도 호선”을 “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” 한다로 수정의결하였다음.
- 철회사유는
  - ② 위원을 시관계 공무원 등으로 명시한 것은 포괄적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의회의 수정의 결안대로 환경관계전문가 및 시관계공무원 2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환경위원회 설치 목적에 어긋나 수용할 수 없고

-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함은 환경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아야하고 사업이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환경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인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본 수정안은 수용할수 없다하여 철회 하였음.
- 금회 상정된 조례안은 위 제15조(충주시 환경위원회의 설치등) 전부를 삭제한 총3장 21개조문으로 배열되어 있으며
- 본 조례안의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
  - 제1조 내지 제8조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 주체별 책무 및 역할을 규정하고 용어의 정의가 설명되어 있으며
  - 제9조 내지 제16조는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시책을 5년마다 수립 환경전문가 및 민간단체등이 참여하고 그필요한 재원조달과 타 자치단체와 교류협력을 통해 환경보존시책을 광역적으로 대처토록 하였고
  - 제17조내지 제20조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시민이 참여등 환경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토록 하고자 하였습니다.

- 위와같이 조문의 내용의 전체 흐름을 보면 환경 문제에 대하여 규제조치는 개별법상 사안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되고
- 또한 환경보전에 관한 추진은 각조문에 대부분 시장이 아닌 포괄적의미인 시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본 충주시 환경기본조례는 자치단체 및 주민의 환경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됨을 검토보고 드립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